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

(참조)

제 목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및 조치사항 알림

1.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제주교육청의 질의에(비상시적 현장체험 학습 이용 차량도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) 법 취지에 따라 비상시적 현장체험 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안내한 바 있어 현장에서는 초등 수학여행, 현장학습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는바,

3. 조합에서는 연합회와 협업하여 경찰청등에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는 한편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홍 위원장과 면담하여 도로교통법 개정(안) 입법발의를 건의하여 12월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  
이 사 장 오 성



시행	서전버조 23-156 호	( 2023.08.22 )	부 장	라영석	실 장	박호동	이사장	( )
우	05510	서울특별시 송파구	울림피로 319(교통회관 11층)	전송	02-418-0071	/	/ 공개	
전화	02-422-0019							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